

제 1 조 정의

본 제1조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하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1.1 고객이란 CoorsTek, Ltd.를 의미하며, 주문서를 발주하거나 본 주문서에 따라 특정 상품을 인수하는 자회사도 포함한다.
- 1.2 주문서란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고객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본 구매주문서와 본 주문서의 별첨, 부록 및 제7조에 따른 변경내용을 의미한다.
- 1.3 공급자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 1.4 상품이란 본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할 상품, 비품, 재료, 물품, 품목, 부품, 구성품, 조립품, 소프트웨어 또는 용역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일부를 의미함)을 의미한다.

제 2 조 수락

본 주문서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의이며, 본 주문서를 수락하는 것은 본 주문서의 조건에 대한 수락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본 주문서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본 주문서에 대한 서면 승낙을 발송한 때 또는 공급자가 본 주문서의 조건 변경에 대한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제조나 기타 본 주문서의 이행을 개시한 때에 계약을 구성하게 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서면 승낙, 청구서 또는 기타 본 주문서에 대한 확인서에 기재된 이와 다른 또는 이에 추가된 조건에 대한 반대와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통지한다. 본 주문서 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은 서면으로 행하고 고객이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이며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3 조 기한엄수

본 주문서의 기한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인도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은 포장비를 포함한 관세지급반입인도가격 (Delivered Duty Paid) (인코텀즈 2000)이다. 판매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고객이나 그 현지 대리인이 해당 상품을 인수할 때까지 해당 상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주문서에 의한 인도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수량, 일정 및 기타 요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인도 지연된 상품의 인수를 비롯한 고객의 어떠한 행위도 본 규정에 대한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본 구매조건에 규정된 조건의 정확한 이행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지연된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일정을 맞추기 위한 운송비 할증금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공급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상품이 선적된 날과 같은 날에 선적에 대한 전자 통지를 송부한다.

- 4.1 공급자가 설치나 배치를 책임지는 경우,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일당 뿐만 아니라 출장경비, 장비의 조달가능성과 같은 모든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제 5 조 포장 및 선적

고객의 주문서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매상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한다. 주문서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 포장, 또는 반품가능한 컨테이너 비용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급자의 통상적인 공정시간 전에 재료를 조달하거나 제조하거나 또는 일정보다 먼저 인도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본 주문서에 규정된 일정보다 먼저 수령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주문된 상품을 운송할 운송인을 특정할 수 있다.

제 6 조 청구서 및 대금지급

공급자는 달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로 상품을 인도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한다. 고객은 이러한 청구서 수령 후 45일 또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일수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일수는 고객이 정확한 청구서를 수령하거나 고객이 상품을 인수한 시기 중 나중에 도래하는 때 부터 개시된다. 고객은 청구금액 중 다통이 있는 금액은 관련 다통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객은 즉시 공급자에게 그러한 다통에 대하여 통지한다. 일단 다통이 해결되면, 해당 청구서는 그와 같이 해결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의해 제공된 상품의 판매세, 사용세, 임대료,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공급자가 특정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세금은 해당 청구서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그 책임 하에 이러한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입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 7 조 변경 및 조정

고객은 언제든지 주문 서면에 의해 통지 없이 상품의 수량, 도면, 디자인, 사양서, 인도일정, 선적 또는 포장 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본 주문서 이행에 소요된 비용이나 시간이 증감되는 경우 공급자는 변경된 주문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구매조건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공급자의 지체 없는 변경된 주문서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주문된 제품이나 재료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추가 요금 (Surcharge)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추가 요금 (surcharge)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주문된 상품 및/또는 용역과 관련된 연료 및/또는 원재료와 관련하여 부담한 추가 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툴링 및/또는 급행 서비스 요금은 이러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최초 가격견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문서와 관련된 품목명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제 9 조 해지

본 주문서의 기한은 엄수하여야 한다.

- 9.1 고객은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주문서 또는 그 일부를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본 주문서를 해지하는 경우, (i)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이행중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본 구매조건에 따라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작성한 (완성되었거나 일부 완성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의 사본 일체를 파기하거나 고객에게 인도하며, (ii)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고객에게 전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서면으로 인증하며, (iii) 고객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공급자는 본 주문서 조건에 따라 모든 기밀유지, 지적재산, 보증 및 면책의무에 기속된다.
- 9.2 해지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고객은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입증된 허용가능한 비용을 공급자에게 상환한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할 총액은 협상으로 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해지와 관련된 공급자의 직접 비용 이외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9.3 공급자가 본 주문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급자가 임의 또는 강제적인 법정관리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공급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책임 부담 없이 본 주문서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검사

본 구매조건에 따라 주문된 모든 상품은 제조기간 및 인수 이전 기간을 비롯하여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를 비롯하여 고객, 그 양수인 및 거래처의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대표자가 상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시기에 공급자의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며,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그러한 검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연장,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한 상품은 인도 후 고객의 최종 검사 및 인수의 대상이 된다. 본 주문서의 사양서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은 공급자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보관되며, 모든 반품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검사 결과 수령한 상품 일부가 본 주문서의 사양서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고객은 본 주문서의 미선적 부분 또는 미완성 부분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인도 전에 이루어진 검사 또는 대금지급이 최종 인수를 구성하지 않음에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제 11 조 보증 및 구제수단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추가하여, 공급자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완성된 모든 상품은 인수 후 24개월 동안 재료와 기술상 하자가 없으며, 관련 도면, 사양서 및 기타 데이터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상품이 고객의 디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해당 상품은 매매할 수 있고, 디자인상의 하자가 없고, 본 주문서에 명시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보증은 인수와 대금지급 이후에도 존속하며, 고객과 그 거래처에게도 유효하다. 고객은 고객이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본 보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본 구매조건에 따라 제조되지 않은 물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i) 공정한 가격 조정 후 보유되거나, (ii) 공정한 가격 조정 후 적절하게 시정조치되거나, (iii) 교체, 시정, 환불 또는 반환을 위하여 반품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 의해 제공된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다. 공급자를 상대로 이러한 보증 및/또는 구제수단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 소송이 필요하고 고객이 승소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모든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다.

- 11.1 공급자가 행한 이러한 보증에 대한 예외 또는 유보는 고객에 별도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적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지는 공급자의 최고경영자 또는 기타 적법하게 수권된 대표가 서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이로써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 및 채무를 부담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i) 즉시 본 주문서를 해지하고/또는 (ii)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본 주문서를 중단한 후 본 주문서에 의한 이행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를 체험한 당사자는 대체 상품을 파악하여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면책

공급자는 (i) 공급자의, 그 대리인 및 직원 및 기타 공급자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다만, 책임이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ii)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행한 근로자손해배상 또는 유사한 직원수익조치에 의한 청구; (iii) 고객을 상대로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기타 청구 (다만, 청구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iv) 공급자가 관련 국제 및 현지 법률, 법령, 규정 및 법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객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청구를 비롯하여 공급자의 본 주문서 이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으로부터 고객, 그 주주, 모회사, 계열회사, 자회사, 대리인, 이사, 직원, 거래처 및 고객측에서 청구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면책한다.

- 13.1 책임이란 소송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모든 판결, 명령, 판정, 청구, 손해, 손실, 비용 및 경비를 의미한다. 책임에는 인신상해, 병,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책임, 및/또는 부동산 및 동산의 사용손실을 포함한 부동산 및 동산의 손상 또는 파손, 도난, 오용 또는 횡령으로 인한 결과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 면책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그 사용과 관련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의 침해 또는 침해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고객, 그 주주, 모회사, 계열회사, 자회사,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 및 고객 측에서 청구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면책한다. 다만, 그러한 청구는 공급자가 고객의 사양서를 준수한 것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거나 또는 화해한다. 다만, 그러한 소송은 상품 및/또는 그 사용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고객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사안 또는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이 법률 또는 형평법상 소유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거나 포기하지 않고 (i) 고객을 위하여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ii) 해당 상품을 교체하거나 변경하여 해당 상품이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변경이나 교체는 고객이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침해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제거 및 교체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상환한다.

제 15 조 공급자가 공개한 정보

고객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고객에게 공개한 정보는 기밀정보 또는 전유적 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주문서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어떠한 제한 없이(특허침해관련청구의 경우는 제외함) 획득된다.

제 16 조 특허권 및 기타 기술정보의 이용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사양서, 도면 또는 기술정보는 여전히 고객의 자산이고 기밀로 유지되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된다. 당해 문서는 본 주문서의 제출시 이용되며,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특허, 영업비밀 또는 기타 권리에 따른 공급자에 대한 허여, 옵션 또는 라이선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은 본 주문서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설계, 도구, 도안, 도면, 정보 및 장비에 구현된 특허권과 당해 설계, 공구, 도안, 도면, 정보 및 장비의 이용 및 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고객에 제공한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이에 근거하여 본 주문서의 이행과정에서 공급자가 최초로 제작하였거나 고안한 발명품 또는 지적재산은 고객의 자산이며, 공급자는 당해 자산의 대한 고객의 권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전한다.

제 17 조 특별 장비

본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본 주문서에 따른 공급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 금형, 도구, 도안, 설계, 사양서 또는 기타 특별장비 및 제작보조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품목은 공급자의 취득시에 고객의 자산이 된다. 이러한 품목은 고객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아닌 공급자의 고객을 위한 물품의 생산, 제조 또는 설계과정에 사용될 수 없다.

제 18 조 고객의 자산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일체의 도구, 장비 및 재료 및 그 대체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 내역은 고객의 자산이며, 향후에도 여전히 고객의 자산이 될 것이며, 공급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러한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제한 및 청구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그러한 자산은 공급자가 점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급자의 위험 부담하에 보관되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에 지급해야 하는 대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손실금은 고객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 19 조 법률의 준수

당사자들은 각자가 모든 관련 한국, 미국 및 지역법률, 규칙, 규정, 법령 및 미국 행정명령(U.S. Executive Orders)을 준수할 것을 진술 및 보증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언제나 적법하게 행위하고 공무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본 주문서와 관련된 어떠한 금원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영문본이 여하한 번역본에 우선한다.

제 20 조 수출관련규정 준수

공급자는 고객의 소재국 및 미국의 관련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반 관련 수출인가 및 그 단서조항을 준수한다. 본 주문서는 국제무기거래규정, 수출관리규정,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한국 대외무역법, 방위산업의 수출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정보 또는 품목과 관련될 수 있으며, 당해 정보는 관할 수출당국 없이는 특정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개인에게도 공개될 수 없다. 명목상의 수입업자/수출업자는 고객이 본 주문서를 이행하기에 필요하고 해당 승인이 요구되는 군수품, 기술자료, 방위용역,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통제품목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수입 및 수출 인가를 득해왔거나 향후에 득할 것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해당 수출 및 수입 법령, 명령 및 방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제기된 청구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제 21 조 정부원청계약상의 약정

본 주문서에 정부계약에 따라 발주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연방 법률 및 규정은 본 특정 주문서에 관련된 것처럼 유효하다. 본 주문서가 정부 계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및/또는 그가 대리하는 자는 현재 여하한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하여 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중지 되거나, 금지되도록 제안되거나 계약체결 자격이 없다고 발표되지 않았음을 인증한다.

제 22 조 양도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지급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금원을 비롯하여 본 주문서 또는 본 주문서상의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은 본 주문서를 모회사, 모회사의 자회사, 고객의 자회사, 계열회사, 승계인 또는 관계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손실 위험

상품에 대한 손실의 위험과 소유권은 인도시 고객에게 이전된다. 단,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가 고객으로부터 거부 의사 통지를 수령한 후 거부된 물품에 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하도급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른 상품을 완성된 형태로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당사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전에 승인된 하도급 계약에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다. 본 조항의 요건은 공급자가 표준 상거래 관련 부대 비품 또는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5 조 권리의 유보

일방 당사자가 본 주문서에 따른 특정 조건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거나 특정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본 문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은 동일 유사한 유형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른 조건이나 특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선물

공급자는 자신과 자신의 어떠한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도 본 주문서를 확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고객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에게 어떠한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 27 조 광고; 홍보

고객 또는 고객의 성명, 표시, 코드, 도면 또는 사양서에 대한 언급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고객의 광고, 판촉활동 또는 어떠한 종류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감사

본 주문서상의 일체의 작업의 이행과 관련된 회계기록, 타임시트, 서면방침 및 절차, 검사결과, 보고서, 서신, 메모 및 기타 문서를 비롯한 공급자의 기록은 공급자가 제기한 청구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부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또는 기타 다른 여하한 사업목적에 위하여 바람직한 한도 내에서, 통상적인 영업시간동안 고객 또는 고객의 수권된 대리인이 검사, 감사 및/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상기 감사, 검사, 시험 및 평가를 위하여 고객 또는 그 수권된 대리인은 본 주문서의 적용을 받는 최초작업주문(initial task order)의 발효일로부터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작업의 완료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은 서면에 의한 합리적인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한다.

제 29 조 독립계약자

공급자는 (i) 자신은 고객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로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주문서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ii) 본 구매조건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는 자는 고객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아니며, (iii) 본 구매조건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며, 당해 의무 이행 과정에서 지원하는 모든 직원의 고용, 그에 대한 지시, 보수 및 해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iv)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장애보험, 국민연금 및 이를 규율하는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준수를 비롯하여 상기 직원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v) 본 주문서상의 공급자의 의무이행과정에서 공급자 자신의 행위 및 공급자의 대리인, 직원 및 하도급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합의한다. 공급자 및 그 직원은 본 주문서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인한 고용보험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납부한다.

제 30 조 보험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의 개시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형 및 최소 부분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i)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ii) 관련 법령 및 한국에서 가장 이득있는 현지 제조회사의 당시 유효한 사업관행에 따라 종합일반책임보상보험, 종합자동차책임보험 및 항공기책임보험. 모든 보험증권은 고객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배서(endorsement)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요구되는 부분을 입증하는 보험증서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의 개시 이전에 고객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증서는 보험회사는 부분범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거나 철회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러한 변경이나 철회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추가 피보험자로 고객을 지정한다. 구매자가 본 주문서상의 보험관련 규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이행하였거나, 본 주문서상의 조건 및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증권에 대한 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보험 규정을 포함하여 본 주문서의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제한하거나 이를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에 대한 공급자의 의무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환경, 보건 및 안전 (EHS)

공급자가 본 계약조건에 따라 고객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자(EHS coordinator)에게 우선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제 32 조 불가가능성

본 주문서의 여하한 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 그와 같이 무효가 된 조항은 본 주문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무효가 된 조항의 의도 및 경제적 효과와 가장 유사한 조항으로 동 조항을 대체하여야 한다.

제 33 조 개별책임(Several Liability)

본 주문서상의 “고객”이란 하나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수는 복수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본 주문서에서 고객으로 칭해지는 경우, 그들의 의무 및 책임은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별책임에 해당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관련 할인 및/또는 공제는 공동 전망(forecast) 및/또는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고객의 구매에 따른다.

제 34 조 비배타적 주문

본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는 독점적인 특권이나 권리를 허여 받지 않으며, 고객은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구매되는 상품의 최소수량이나 최대수량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또는 약정도 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누적적 구제수단

본 계약에 규정된 구제수단은 누적적이며, 법률이나 형평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구제수단에 추가된다.

제 36 조 존속

그 의미와 문맥에 따라, 일방 혹은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 이후에도 존속하는 본 주문서의 조항은 본 주문서의 완료, 기한만료, 해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존속한다. 본 주문서의 규정 및 고객의 원청계약에 포함된 조건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자 또는 공급자에게 전부 적용된다.

제 37 조 책임의 제한

공급자가 제 10조, 제 12조 내지 16조, 제 19조 및 제 20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당사자도 계약이나 보증 위반, 불법행위, 엄격책임 등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비용절약기회의 상실, 시설 또는 장비 이용이익의 상실, 시설 폐쇄 또는 조업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운영비용의 증가, 또는 기타 경비, 부담금, 벌과금 또는 지체배상금을 비롯하여 특별 손해, 간접적 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당사자가 전술한 손실이나 손해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 받은 경우 또는 당해 손실이나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38 조 섭외사법 및 관할지

본 주문서는 섭외사법상의 원칙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원이 당사자들간의 합의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 주문서에 포함된 조건에 추가하여, 특정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이와 달리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상이한 조건들이 한국 상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국제상품판매계약(Contract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대한 유엔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기하여, 계약의 어떠한 조건을 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할 것에 합의한다.

제 39 조 완전한 주문

본 주문서는 이에 대한 모든 첨부서류와 함께 본 주문서의 주요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주문을 구성한다. 본 주문서는 본 주문서의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들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및 서면상의 의사표시, 주문 및 양해를 대체한다. 당사자들은 본 주문서는 당사자들의 향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